

시정질문답변서

<복지문화국>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경로우대 정책 확대와 관련하여 ?
 - 복사골 실버할인제의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찾아 부천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바람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기금 등 분산되어 있는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

(답 변)

- 복사골 실버할인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 원미구에서 노인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사골 실버카드제』에 대한 원미구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7월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복사골 실버할인제의 필요성에 대해 242명중 222명(92%)이 존속을 원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음
 - 확대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경기불황으로 참여업소의 감소와 기존 업소 중 휴·폐업 및 업종 변경으로 협력업소 증가에 한계가 있었음
 - 향후에는 협력업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원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소 확대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시키고 이후에 시 전체 확대를 검토하겠음
- 노인복지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 부천시 노인복지정책 관련 조례는 4개 분야로 제정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대상 및 특성상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에 개별 조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음

<도시환경국>

□ 질문의원 : 강일원 의원

- 소사구 괴안동 6-5, 6번지 상 시공 중인 건축물의 건축법 제11조 제 7항 제1호에 의한 착공신고 규정(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신고) 위반에 관하여

(답 변)

- 소사구 괴안동 6-5, 6번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한경수의 건축허가 일은 2006. 7. 7일이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일은(지정고시) 2006. 11. 2일임
- 또한 건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착공신고일은 2007. 5. 31일데 반하여 개발행위인 착공신고 제한일은 이보다 훨씬 경과된 2009. 5. 1일로 법상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건축물임
- 그러나 우리시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사중단을 통한 협상중재, 민원대책회의, 법률자문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건축주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지난 11월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부천시의 주장이 위법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및 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부천대학 주변에 청소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만들 의향이 있는지 ?

(답 변)

-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지난 11월 입찰공고를 거쳐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천 만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에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보되어 내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 부천대학 주변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완료 후, 재정여건 및 국·도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질문의원 : 류재구 위원

○ 친환경 저 에너지 적용 건축물 지원 대책은?

- 친환경 저 에너지 적용 시설물 설치 시 행정은 물론 재정적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답 변)

○ 무엇보다 부천시 그린빌딩 인증제는

건축주가 실천 용이한 저 비용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구별된다 하겠음

○ 2005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정부에서도 특별한 재정 지원책이 없는 만큼 범국가적 녹색정책은 인센티브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자율적 참여와 건설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법령 취지이기도 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시 그린빌딩 인증제 시행 동기는 무엇보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을 유도하고 시민의식의 인식 변화를 우선시하기 위해서이고,

앞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관계자 표창, 그린빌딩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건축물대장에 친환경 사실 등재, 각종 영업허가 시 우선 처리 등 다양하게 행정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현실적인 세제 지원방안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후속조치를 계속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예비 인증을 마친 건축물 중 엄선하여 본 인증서 교부 시 친환경건축물 이미지 부각 등 시너지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음

<건설교통국>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부천터미널 소풍 이행보증금 109억원 회수방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지하보행통로 설치 시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 지하보행통로(308m)만 설치 시 치안문제, 운영관리문제, 노숙자 및 슬럼화 등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부천시의 대처방안 및 계획과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계획은?
 - 지하보행통로 설치 공사비 124억원 산출근거와 추가 공사비가 필요할 경우 해결방안은?
 - 지하철 완공시점이 2012년 12월 정도로 감안할 때 지하철 완공시점에 지하보도 준공이 가능한지?
 - 지하보행통로와 접속되는 지하철 구조물과의 접속 관계는

(답 변)

- 소풍 지하보행통로 관련 미납된 109억원 이행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채권은 부천터미널(주)가 한국자산신탁(주)와의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잔여금, 신탁계약서 해지·종료시의 이전등기 청구권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자산이 미납 이행보증금보다 훨씬 크므로 이행보증금은 확보가 가능하며,
 -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 미납분(109억원)은 본안소송(약정금 등 청구) 최종판결시 승소할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기 결정된 2개의 채권가압류(2009.04.27, 2009.11.13)에 대하여 본 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하여 확보할 계획임

○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부천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천 정부 청사역 지하보도, 동인천역 지하상가, 인천터미널역 지하보도 등의 타 도시 유사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치안문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CCTV 및 셔터설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별도의 지하공간 개발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지하보행통로 설치 사업비 124억원은 이행각서 제6조①항에 의거 부천터미널(주)가 “지하공공도보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4호)”과 지하보행통로 설치와 관련된 법령 등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며, 이행각서 제6조② 항에 부천터미널(주)에서 지하보행통로 산정 이후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천시와 협의되어야 하며, 협의가 일치하지 않을 시는 부천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부천터미널(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최소화시켜 지하보행통로 지하철7호선 완공시점(2012년 12월)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하철7호선 756정거장은 부천터미널 소풍과의 지하보행통로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않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 될 수 있도록 부천터미널(주)에 요청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 질문의원 : 이영우 의원

- 지하수공의 완벽한 원상복구 관련
 - 최근 3년간 지하수 원상복구를 신고한 곳은 얼마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 향후 진행될 뉴타운 사업 및 도시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하여 완벽한 지하수 원상복구 처리 대책은 ?

(답 변)

- 최근 3년간 원상복구된 지하수는 총 356공이며, 지하수 폐공 처리절차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폐공하려는 자가 “지하수이용 종료 신고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게 되면 지하수관리 담당공무원이 원상복구(원상복구 계획서)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하수 이용 종료증”을 교부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폐공된 지하수는 총 146공이며 향후 관내 뉴타운사업 및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 개발사업 지구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수조사 내역과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관정 인·허가 현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김승동 의원

- 굴포천 물길연결사업과 연계하여 부천시 전역에 대한 “수변도시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인아래벚길(경인운하)”과 연계하여 가칭 “부천운하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검토용역”을 시행하는 등 굴포천의 물길 연결을 통한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추진중에 있으며,
-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3개 뉴타운지구(소사, 원미, 고강)내 춘의천, 소사천, 역곡천, 오쇠천, 고리울천 등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되거나 사라져 버린 물길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물길복원을 통한 친수생태공간 조성 계획들은 우리시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변도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이고 지엽적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이에 따라 굴포천을 비롯한 관내 7개 하천(소하천 포함)과 동부간선수로, 시민의 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도시로의 장기비전을 제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수변 도시공간의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도시 곳곳에 물이 흐르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음

<뉴타운개발사업단>

□ 질문의원 : 이영우 의원

- 뉴타운 및 재건축 등의 사업에 있어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폐기 및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

(답 변)

- 우리시 뉴타운 지구 및 도정법상의 재개발구역 등의 건축물 철거 대상은 뉴타운 13,000동, 재개발 등은 5,550 동으로 현재까지 파악됨
- 일부 건축물 내장재 등에는 석면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서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물 해체 및 철거작업 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우리시는 건축물 철거 시 효율적인 석면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건·환경상 위해가 없도록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전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반영됨
- 향후,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석면 조사결과가 포함된 착공계가 제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경기도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시 지침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재개발구역 내 다 물건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적용기준이 뉴타운과 재개발구역이 달라 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 및 답변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
- 시 집행부의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대책은 ?

(답 변)

- 재개발구역 내 다물건 소유자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한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 시점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조합정관에 정함에 따라 뉴타운사업과의 상이한 점이 있었음
- 조합설립이후 분양권의 추가발생은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시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합설립이후에 다물건 소유자로부터의 취득한 물건에 대한 분양권 제공은 정관에서 제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일원화하겠음
- 뉴타운지구 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은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에 대한 오해와 추진위원회 등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에서 초래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설명회 실시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하고,
- 시의 명확한 행정기준 및 지침 등을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주민혼란 예방 및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심곡1-1주택재개발구역은 비용분담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 정착율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시는 주민의 자율적 의지는 물론 소수의견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부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으로 비용분담 사항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화함은 물론 정관 등을 첨부하여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켜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기반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촉진계획 수립 전부터 수차에 걸쳐 지역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뉴타운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어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가 마련되었으며, 우리시는 지원대상 조건에는 해당되나 구체적인 지원금액,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기반시설비용 지원이 결정되면 이에 맞춰 도비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일정부분 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규모 및 대상에 대해서는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검토 중에 있음
- 기반시설비용 지원에 있어 촉진지구와 그 외 사업구역과는 형평성 및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부천시보건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무료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제안 ?
 - 독감예방접종을 집근처 의료기관에서 무료 실시방안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시행 사전준비 철저

(답 변)

- 인플루엔자 접종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중심의 무료 접종을 실시함
 - 2009년 보건소 접종 : 어르신 편의도모를 위한 동 주민센터 순회
- 어르신 대상의 독감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방접종 우선순위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령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전환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시일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예방접종 행정지원사이트 대상자 자료 입력 :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본부 협조
 - 의료기관 설명회 및 주민홍보

□ 질문의원 : 김혜경 의원

- 배달전문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2건 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음
-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실태를 공개하여 잘하는 업소는 격려와 응원 하고 불량업소는 시민에게 알려 이용치 못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타기관의 우수시책 등을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
- 2010년 배달전문음식점 관리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답 변)

○ 2009년도 배달전문음식점 관리

- 배달전문음식점 총 449개소를 관리하고 있음

○ 2010년 배달전문음식점 특별관리 계획

- 타 기관 우수시책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음
- 배달음식점 단속은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현장 실사단을 운영,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음
- 단속 결과 우수업소 및 불량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업소 명단을 공개 하도록 하겠음